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외 국 인 근 로 자 의 고 용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8929호, 2022.6.10.공포, 2022.12.11.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 기준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전문인력·시설 등에 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임

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지정취소 등 사유

그간 고용노동부고시로 규정하고 있던 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한 지정취소,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유 중 ‘운영성과의 미흡 등’에 관한 내용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

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 등)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 “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2. 교육 총괄·시행 인력 및 교육 담당 강사를 확보할 것
3. 강의실 및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 것
4. 그 밖에 전문인력·시설 등 기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 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법</u> <u>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u> <u>관을 말한다.</u> 1. <u>한국산업인력공단</u> 2. <u>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u> <u>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u> <u>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u> <u>단체. 이 경우 구체적인 지정</u> <u>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u> <u>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u> <u>다.</u> <u><신 설></u>	<u>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의 지</u> <u>정 등) 법 제11조의3제2항에서</u> <u>“전문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각 호</u> <u>의 기준을 말한다.</u> 1. <u>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u> <u>일 것</u> 2. <u>교육 총괄·시행 인력 및 교육</u> <u>담당 강사를 확보할 것</u> 3. <u>강의실 및 숙식을 제공할 수</u> <u>있는 시설을 확보할 것</u> 4. <u>그 밖에 전문인력·시설 등 기</u> <u>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u> <u>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u> <u>제18조의2(외국인 취업교육기관</u> <u>의 지정취소 등) 법 제11조의4</u> <u>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u> <u>정하는 경우”란 고용노동부장</u> <u>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외국인</u> <u>취업교육기관 평가 결과 연속 2</u> <u>회 이상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u> <u>우를 말한다.</u>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